

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6. 30.(목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○ 제36차 서면회의 결과 <보고안건> 2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 (2016-37-137)

○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(재승인)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신중철 편성평가정책과장의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
- 총 153개 사업자 351개 방송국을 평가대상으로 하고, 평가지원단 심사, 방송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'15년도 평가결과를 확정 및 공표하는 평가절차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

나.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(2016-37-138)

- o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)에 따라 주식회사 부산은행 등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주식회사 부산은행, 애드믹스엠홀딩스 주식회사, 주식회사 에이티엔, 주식회사 인텔리안시스템즈, 주식회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, 주식회사 조이코퍼레이션 등 6개 법인에 대해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이행 등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하고,
 - 주식회사 넥스트페이지, 주식회사 리림, 주식회사 야놀자, 주식회사 앤씨이앤, 주식회사 하나씨티피 5개 법인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㉑ 보고사항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지난 3월 개정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금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
 - 개정 「정보통신망법」 상의 개정된 용어 반영,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규정 정비,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 통지방법을 '전자우편·서면·모사전송·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'으로 규정,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세부기준을 정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
6. 폐 회 (10:12)